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15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등 ····· 3

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 3

나. 우대근로자 공제금액 인상(정희용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6

# Ⅰ. 개요

## 1.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15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지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3. 24.

(3) 회 부 일 : 2026. 3. 25.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높은 공제액을 적용하는 반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등의 고용 확대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견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액을 1인당 150만원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비수

도권 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청년 등의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나목).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액 상향 등

### 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 현행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관련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을 통합함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고용 관련 기존 세액공제**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구 분 | 공제액 (단위: 만원) | | | |
|---|---|---|---|---|
| | 중소 (3년) | | 중견 (3년) | 대기업 (2년) |
| | 수도권 | 지방 | | |
| 기본 | 700 | 770 | 450 | - |
| 우대 | 1,100 | 1,200 | 800 | 400 |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

**통합고용세액공제(2026년 기준)**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구 분 | | 공제액 (단위: 만원) | | | |
|---|---|---|---|---|---|
| | | 중소 (3년) | | 중견 (3년) | 대기업 (2년) |
| | | 수도권 | 지방 | | |
| 기본 | 1년차 | 400 | 700 | 300 | - |
| | 2년차 | 900 | 1,200 | 500 | |
| | 3년차 | 1,000 | 1,300 | 500 | |
| 우대 | 1년차 | 700 | 1,000 | 500 | 300 |
| | 2년차 | 1,600 | 1,900 | 900 | 500 |
| | 3년차 | 1,700 | 2,000 | 900 | - |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

| 구 분 | 공제액 (단위: 만원) | |
|---|---|---|
| | 중소 | 중견 |
|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 1,300 | 900 |

동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을 대상으로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할 경우 기업규모, 소재지역, 근로자 유형 등에 따라 산출한 금액만큼 매년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공제기간 중 고용인원이 감소할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전면 중지되며, 감소한 인원에 대한 공제금액을 사후추징하는 구조였음.

이후 2025년 3월 세법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우대공제 대상이 경력단절 여성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로 확대되어 경력단절자의 범위에 남성이 포함되었고, 경력단절 사유에 가족돌봄이 추가되었음.

또한, 2025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양호한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공제 개시 이후 고용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감소분에 한하여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유지하며, 고용인원 감소 시 공제액 추징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보다 1년차 공제액을 줄이고 2년차·3년차 공제액을 늘리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음.

또한, 육아휴직복귀자(2026년 말까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적용되어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전환일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제액 상당액이 추징됨.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6년에는 총 4조 6,340억원의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소득세 | 10,761 | 13,524 | 15,917 | 18,523 | 19,976 |
| 법인세 | 18,814 | 22,379 | 22,190 | 24,564 | 26,364 |
| 합계 | 29,574 | 35,903 | 38,107 | 43,087 | 46,340 |

주 1) 2025, 2026년도는 전망치임
2) 기존 고용지원 세액공제 실적을 포함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 집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나. 우대근로자 공제금액 인상(정희용의원안, 조지연의원안)

### 현 행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적용대상: 모든 기업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제외)

○ 고용지원대상: 상시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단,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최소고용증가인원수(시행령):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 현행:

| 구 분 | | 공제액 (단위:만원) | | | |
|---|---|---|---|---|---|
| | | 중소(3년 지원) | | 중견 (3년 지원) | 대기업 (2년 지원) |
| | | 수도권 | 지방 | | |
| 기본 | 1년차 | 400 | 700 | 300 | - |
| | 2년차 | 900 | 1,200 | 500 | |
| | 3년차 | 1,000 | 1,300 | 500 | |
| 우대 | 1년차 | 700 | 1,000 | 500 | 300 |
| | 2년차 | 1,600 | 1,900 | 900 | 500 |
| | 3년차 | 1,700 | 2,000 | 900 | - |

* 우대근로자: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개정안

□ 우대근로자 공제금액 인상

○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 고용지원대상: (현행과 같음)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1인당 세액공제액
(단,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 최소고용증가인원수(시행령):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 정희용의원안:

| 구 분 | | 공제액 (단위:만원) | | | |
|---|---|---|---|---|---|
| | | 중소(3년 지원) | | 중견 (3년 지원) | 대기업 (2년 지원) |
| | | 수도권 | 지방 | | |
| 기본 | (현행과 같음) | | | | |
| 우대 | 1년차 | 800 | 1,100 | 600 | 400 |
| | 2년차 | 1,700 | 2,000 | 1,000 | 600 |
| | 3년차 | 1,800 | 2,100 | 1,000 | - |

○ 조지연의원안:

| 구 분 | | 공제액 (단위:만원) | | | | |
|---|---|---|---|---|---|---|
| | | 중소(3년 지원) | | 중견(3년 지원) | | 대기업 (2년 지원) |
| | | 수도권 | 지방 | 수도권 | 지방 | |
| 기본 | (현행과 같음) | | | | | |
| 우대 | 1년차 | 700 | 1,000 | 500 | 650 | 300 |
| | 2년차 | 1,600 | 1,900 | 900 | 1,050 | 500 |
| | 3년차 | 1,700 | 2,000 | 900 | 1,050 | - |

| 현 행 | 개정안 |
| --- | --- |
| ○ 사후관리: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소분에 한하여 공제 배제<br>○ 적용기한: 2028. 12. 31. | ○ 사후관리: (현행과 같음)<br>○ 적용기한: (현행과 같음)<br>○ 적용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조지연의원안)<br>○ 시행일:<br>2027. 1. 1.(정희용의원안)<br>공포 후 3개월(조지연의원안) |

* 정희용의원안 2026. 3. 5. 발의(의안번호 17242), 조지연의원안 2026. 3. 24. 발의(의안번호 17715)

□ 개정안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 우대근로자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안은 기업규모,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우대근로자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을 100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이고,

조지연의원안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대근로자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을 150만원씩 인상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첫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우대근로자를 채용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 기준 청년 고용률(45.0%), 장애인 고용률(34.0%), 60세 이상 고용률(46.7%)은 전체 고용률인 69.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1)]

또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약 111만명이며, 15~54세 기혼여성 중 14.9%를 차지하고 있음.

[2025년 경력단절여성 규모]

(단위: 천명, %)

| 구분 | 15~54세 기혼여성 | 비취업여성 | 경력단절여성 |
|---|---|---|---|
| 규모 | 7,403 | 2,419 | 1,105 |
| 15~54세 기혼여성 규모 대비 비율 | 100.0 | 32.7 | 14.9 |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둘째, 조지연의원안은 지방 소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기업 51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 소재 기업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력 확보(50.5%)'가 선정되었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과제 중 2번째로 필요한 중점과제로 '대폭적인 조세 감면(38.4%)'이 선정되었음.

지방 소재 기업의 인력난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선호 현상까지 겹쳐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국가데이터처,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6. 1.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5년 12월 세법개정을 통해 ① 고용기간에 비례한 공제금액 점증구조를 도입하되, ②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최소고용증가인원수[2] 초과 고용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③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액 추징규정을 삭제하며, ④ 공제개시 이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감소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중단하고 고용 유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유지하도록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편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정책효과[3] 등에 대한 조세특례 평가를 거친 이후에 공제금액 인상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청년 등 채용 지원 사업 현황]

| 지원대상 | 사업명 |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
|---|---|---|
|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취업애로청년 등 채용 후 6개월 고용 시 사업주 월 최대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br>-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해당 기업에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고용장려금 |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인당 35만원~9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 고령자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 -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명당 |

2)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3)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우대근로자 채용 유인 효과 등

| 지원대상 | 사업명 | 사업내용 및 편성현황 |
|---|---|---|
| | |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비수도권의 경우 1,44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
| 경력단절 여성 | 새일고용장려금 |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인턴지원금 지급(월 80만원, 최대 240만원)<br>-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해당 기업에 장려금 지급(80만원)<br>- 정규채용 후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에 장려금 추가 지급(80만원) |

| 문 의 처 |
|---|
| 02)6788-5154 |